『첨부 2』

2016년도
주안7동 자체행정감사 결과

인천광역시남구
(감사실)

2016년도 주안7동 자체행정감사 실시결과

Ⅰ 감 사 개 요

1. 감사범위

가. 수감기관 : 주안7동 주민센터

나. 감사범위 : 2013. 9. 1 ~ 2016. 10. 31일 까지 추진한 업무전반

2. 감사기간 : 2016. 11. 8 ~ 11. 11 (4일간)

3. 감 사 반 : 감사팀 3명

4. 구민감사관 참관 현황

- 성 명 : 김○○
- 일 시 : 2016. 11. 8 (1일)

5. 중점 감사사항

가. 주민센터 운영실태 전반

나. 세출예산 집행실태 및 물품구입 등 적정 여부

다. 저소득층 생활보호지원 대책의 효율적 추진실태

라. 각종업무(서무, 주민등록, 민방위, 청소) 추진실태 등

Ⅱ 감 사 결 과

1. 총 괄

가. 행정상 조치 ····· **8 건**

- 시 정 ····· 3 건
- 주 의 ····· 5 건

나. 재정상 조치 ····· **1 건 25,000원**

- 징 수 ····· 1 건 25,000원

Ⅲ 주 요 지 적 사 항

◆ 수입증지 수입금 처리 부적정

○ 인천광역시남구 수입증지 조례 제7조(수입금의 납입)에 의하면 무인민원발급기와 통합증명발급기 등에 의한 수입금의 납입은 그 다음날 까지 금고에 납입하여야 하며, 수입금은 일일결산 하여야 함에도,

☞ 주안7동에서는 통합민원발급기 등에 의한 수입증지 수입금의 납입을 1일에서 최대 5일 동안 지연하여 입금함.

처분요구 : 수입증지 수입금을 지연하여 입금한 사례로 엄중주의 촉구하오니, 향후 동일 및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람(주의)

◆ 신규주민등록증 미발급자 공고 미실시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6조에 의하면 구청장은 법 24조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려면 그 발급대상자에게 12개월 이상의 신청기간을 정하여 통지하되(시행령 제29호서식), 발급대상자의 무단전출 등으로 인하여 통지서를 내줄 수 없으면 이를 동 주민센터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 주안7동에서는 주민등록증발급통지서를 수령하지 않은 5명에 대하여 공고를 하지 않음.

처분요구 : 주민등록증발급통지서 미수령자 5명 중 현재까지 미발급자에 대하여 공고 실시 후 관련 규정에 맞게 처리하시기 바람(시정)

◆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미징수

○ 주민등록법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 의하면 법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분실)로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명당 5천원을 수수료로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 주안7동에서는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징수 대상인 5명에 대하여 근거 없이 수수료를 면제 또는 징수하지 않음.

처분요구 : 주민등록증 분실 재발급자 5명에 대하여 분실재발급 수수료를 징수하시기 바람(시정)

◆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세출예산에 정한 목적 외의 경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통상적인 실·과·소 등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부서운영 공통

경비로서 실·과·소장의 활동 경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실·과·소 전체 직원의 사기앙양 경비로 사용하여야 함에도,

☞ 주안7동에서는 통상적인 조직운영과 관련 없는 전출자에 대한 격려 물품(방석 및 쿠션) 구입비로 부적정하게 집행함.

처분요구 : 관련 규정에 맞지 않게 부적정하게 지출한 사례로 엄중주의 촉구하오니, 향후 동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람(주의)

◆ 신용카드 사용 부적정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제Ⅳ장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카드 사용요령에 따르면 대형할인점, 문구점 등에서 구매금액에 따라 적립해주는 인센티브로 세입조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무용품 등의 구매나 불우이웃 돕기 등 행정용도로 사용하여야 하며, 신용카드 사용 후 매출표 서명란에는 사용자의 소속,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고, 담당공무원은 매월 1회 카드사용 내역을 검색하여 분임재무관(실·과장)까지 보고(결재)하고 분임재무관은 이를 확인하여야 함에도,

☞ 주안7동에서는 대형할인점에서 구매 금액에 따라 적립해 주는 포인트를 개인용도로 1회 적립하였고, 감사일 현재까지 대부분의 매출표 서명란에 사용자 성명을 기재하지 않았으며, 매월 보고하여야 할 카드사용내역을 보고하지 않음.

처분요구 : 관련 규정에 맞지 않게 부적정하게 업무 처리한 사례로 엄중주의 촉구하오니, 향후 동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할 것(주의)

◆ 공공운영비 집행 부적정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세출예산에 정한 목적 외의 경비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공공운영비는 공공요금 및 제세, 연료비, 시설 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의료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인천광역시남구 물품관리 조례 제10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관서당경비에 의한 물품의 매입은 소모품에 한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 주안7동에서는 자산취득비로 구입하여야 할 비품인 차량용 블랙박스를 공공운영비로 집행함.

처분요구 : 관련 규정에 맞지 않게 부적정하게 지출한 사례로 엄중 주의 촉구하오니, 향후 동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할 것(주의)

◆ 장애인 자동차 표지 관리 미흡

○ 장애인복지법 제39조(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에 대한 지원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표지의 발급대상), 제27조(장애인사용자동차등 표지의 발급 등) 및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사업 안내 지침에 의하면,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으면서 함께 거주하는 직계 존·비속이나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의 배우자 및 자녀 명의로 등록하여 주로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하여 장애인자동차 표지 발급을 원칙으로 하며,

○ 장애인 본인 명의는 「본인용」 표지를 발급하고, 보호자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은 「보호자용」 표지를 발급하여야 함.(단 장애인과 공동명의 일 경우 「본인용」 표지를 발급하며, 지분관계는 고려하지 않음) 또한 보행상 장애 유무에 따라 장애등급판정기준표(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한 보행상 장애에 해당 될 때 「주차가능」 표지를,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주차불가」 표지를 발급하여야 함.

○ 위와 같이 관련 규정에 따라 신청 및 발급된 자동자 표지는 신청 및 발급사항을 행복이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읍·면·동장은 장애인이 사용하는 차량의 소유권의 변동, 말소 그리고 차량번호의 변경 사항 등을 정기적으로 기간을 정하여 파악하여야 함. 특히 보호자 명의의 차량일 경우는 차량소유자인 보호자의 주민등록 변동사항도 정기적으로 파악하여 장애인자동차표지 회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또한 보호자가 운전하는 경우 운전자가 주민등록을 변경한 경우 등을 정기적으로 파악하여 차량을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차량을 장애인이 사용하지 않는 것이 확인되면 표지를 회수하여 폐기하여야 함에도,

☞ 주안7동에서는 보행상 장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주차가능" 표지가 2건 발급되었으며, "보호자_주차가능" 표지를 발급받은 이후 보호자(운전자)가 주소지를 이전하여 현재 동일세대 또는 같은 생활권을 유지하지 않음이 2건 확인됨.

처분요구 : 보행상 장애에 해당하지 않는 "주차가능" 표지는 반납/폐기 후 규정에 맞게 재발급 처리, "보호자_주차가능" 표지의 보호자(운전자) 주소지 이전 건은 보호자의 주민등록 변동사항에 따라 반납(폐기) 및 재발급 여부를 판단하시어 장애인복지법 등 관련 규정에 맞게 처리하시기 바람(시정)

◆ 등록장애인 재판정 대상자 관리 미흡

○ 장애인복지법 제32조(등록장애인),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장애상태의 확인)에 따르면 장애인등록 담당은 장애등급 판정기준의 규정에 따라 주기적으로 또는 의사의 소견에 의한 재판정이 실시되도록 하여 등록장애인의 장애등급이 적정하게 유지되도록 하여야 함.

○ 재판정 시기가 도래한 장애인에 대하여 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장애인등급재판정통보서를 기한일 3개월 이전부터 최소 1개월 전에는 통보받도록 하여야 하며, 기한 내 재판정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재판정 촉구 공문을 통지하고 1개월 이내 장애진단서 등을 제출하여야 함을 안내하며, 재판정 촉구 기한 내에도 재판정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행정절차에 따라 장애인등록 취소에 대한 사전통지 공문을 발송하고 2주간의 의견청취를 받은 후,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장애인등록을 취소하고 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장애인등록증 반환 통보서를 송달하고 2주간의 기한 내에 장애인등록증을 반환토록 하여야 함.

☞ 주안7동에서는 장애인 재판정 대상자인 3명에 대하여 재판정 통보-촉구-등록취소 사전통지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데 있어 미흡한 사실이 있음.

처분요구 : 향후 등록장애인의 장애등급이 적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재판정 업무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람(주의)